

독일,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

- **(장기체류허가 보유자)** 독일을 포함한 EU, 쉥겐, 영국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그러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(배우자, 미성년 자녀)
- **(전문인력)** ①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(고용관계 증명 필요)을 받은 전문인력, ② 학자·연구원, ③ 주재원, 인력(임원/전문가 등에 한해 사내이동), ④ 회사간부, ⑤ IT-전문가, ⑥ 공익부문 종사자
 - 단, △ 계약서 등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근무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, △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직업활동이 필수적(양자간 경제적 관계, 독일 경제 및 내수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적임을 의미)이고, 이러한 업무의 연기나 외국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주의 확인서 제시 필요
 - 독일 체류법에 따라 장기체류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(한국도 해당)의 전문인력이 독일에 입국하여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, 거주지역 소재 독일의 재외공관에 해당 증빙자료와 확인서(업무내용 기술)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만 독일 입국 가능
- **(사업적 이유 단기방문)** 상기 전문인력 중 시급한 사업적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
 - 팬데믹 상황에서도 업무가 필히 요구된다는 증명서(고용주 발급 및 독일 내 사업파트너 발급) 제시 필요
- **(직업교육)** 의료·보건·운송 부문 직업교육의 경우에만 입국 가능
 - 단, △ 직업교육 목적의 체류허가, △ 직업교육이 해당 부문에서 실시된다는 확인 증명서, △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직업교육소의 증명서 제시 필요
 -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어학과정 목적 입국은, 어학과정 후 상기 부문에서 직업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증명이 있어야 허용(어학코스 종료 후 귀국한 뒤 직업교육을 위한 독일 재입국은 불허)
- **(학위과정)** 학위과정을 목적으로 하고, 학위과정이 외국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
 - 독일 대학에서 발급한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및 대면현장수업 등의 사유로 필수 독일 체류 사유 제시 필요
- **(동반가족)** ① 핵심 가족구성원(배우자·미성년 자녀)의 합류목적 최초 입국, ② 중요한 가정사(장례식·결혼식, 미성년자의 부모 방문, 독일국적 배우자와의 동행)를 위한 입국
 - 제3국 국적자의 가족구성원이 독일 내 체류지로 귀환/재입국할 경우, 체류자격 조건(여권, 장기체류자격증 등) 충족시에는 연고자와 무관하게 가능
- **(공통 주의사항)** 입국 허가에 관련된 결정은 현장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르는데, 국경 통과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제시되어야 함
 - 각 주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유의